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5636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나204365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563648 판결

전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변론종결2023. 6. 23.

판결선고2023. 9. 8.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에게, 원고 산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7. 3.경부터 2020. 9.경까지 아래 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2016~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관악세무서장은 2019.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아래 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1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북전주세무서장은 2017. 2.경부터 2019. 7.경까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1)에 따라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에게 부과·고지한 2015~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중 미납금액에 대하여 위 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B를 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표 순번 1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이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총 고지세액은 409,632,270원이다.

2) 이 사건 소제기일(2022. 12. 1.) 무렵 B의 체납액 등(가산금 포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5,905,2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부가가치세	2016	2016-12-31	2017-03-08	168,090	173,130
2	부가가치세	2016	2017-06-30	2017-09-07	172,240	177,400
3	부가가치세	2017	2017-12-31	2018-03-08	165,050	170,000
4	부가가치세	2018	2018-06-30	2018-09-06	166,060	171,040
5	부가가치세	2018	2018-12-31	2019-03-07	168,850	173,910
6	부가가치세	2019	2019-06-30	2020-09-06	159,690	164,480
7	부가가치세	2019	2019-12-31	2020-03-06	163,530	168,430
8	부가가치세	2020	2020-06-30	2020-09-09	64,070	65,930
9	양도소득세	2018	2018-07-31	2019-11-07	21,837,570	28,224,990
10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2020-04-03	2,716,900	3,409,500
11	종합소득세	2019	2019-12-31	2020-10-05	73,650	75,850
12	부가가치세	2016	2016-06-30	2017-02-23	34,151,430	55,766,390

1	부가가치세	2016	2016-12-31	2017-03-08	168,090	173,130
13	근로소득세	2016	2016-11-01	2017-02-23	1,243,020	1,979,250
14	퇴직소득세	2016	2016-11-01	2017-02-23	207,930	214,160
15	부가가치세	2016	2017-01-03	2017-02-23	46,776,280	74,070,030
16	부가가치세	2016	2017-04-21	2017-05-17	3,982,220	6,251,680
17	부가가치세	2017	2017-07-01	2017-09-28	293,010	301,790
18	법인세	2016	2017-08-01	2017-09-28	9,916,130	15,402,150
19	법인세	2016	2017-08-01	2017-09-28	6,761,010	10,496,960
20	부가가치세	2015	2018-01-03	2018-03-21	15,599,880	23,625,490
21	부가가치세	2015	2018-01-03	2018-03-21	115,821,690	175,503,570
22	부가가치세	2015	2019-06-01	2019-07-19	17,333,200	23,182,780
23	부가가치세	2015	2019-06-01	2019-07-19	131,690,770	176,136,370
합계	409,632,270	595,905,280				

나. B의 피고에 대한 주식 증여

B은 2020. 12. 31.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주식회사 E이 발행한 보통주 7,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12. 31. 당시 합계 409,632,270원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일(2022. 12. 1.) 무렵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595,905,28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B은 2020. 12. 31.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평가액 540,498,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남편 B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1999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B에게 대여함으로써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B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위 대여금채무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B의 2015 내지 2020년 귀속분 재화의 공급, 소득 내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거나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2015. 12.경부터 2020. 6.경 사이에 성립하였고, 모두 2020. 10. 6. 이전에 부과·고지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2020. 12. 3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595,905,280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595,905,2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위 595,905,280원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1. 3. 29. 세무서장에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35,000,000원(= 액면가 5,000원 × 7,000주)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540,498,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540,498,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주식 외에 B의 다른 적극재산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위 540,498,000원이다. 따라서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B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점, 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초래되거나 심화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이 사건 주식이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구하고 있으며, 특별히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2020. 12. 31.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판사이진경

판사이동형

별지

1)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